#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헌승·김선교·서일준

서지영 · 김승수 · 유용원

박덕흠 • 김도읍 • 고동진

유영하 · 정성국 · 윤상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 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 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장애
	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